PRUGIO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2단지 분양광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2022년 5월 12일자 청약홈 홈페이지 및 문화일보에 게재된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2단지 분양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공급내역 관련사항 변경내용

구분	기존(안) [광고일자 : 22.05.12]	금번(안) [광고일자 : 22.08.11]
분양신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파주시 2022–건축과–분양신고–제6호(2022.05.11.)로 분양신고	– 기존 86실 : 2022–건축과–분양신고–제6호(2022.05.11.) – 금번 81실 : 2022–건축과–분양신고–제9호(2022.08.10.)
공급규모	지하 3층 ~ 지상 24층 1개동 오피스텔 총 86실	지하 3층 ~ 지상 24층 1개동 오피스텔 총 86실 중 81실

공급대상/거주자 우선 분양

	군	타 입	공급호실(실)	신청호실(실) 거주자 우선공급(10%)	신청호실(실) 일반공급	비고
기존(안) [광고일자 : 22.05.12]	1군	107A	64	8	76	※ 분양신고일(2022.05.11, 광고일과 다름) 기준으로 파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함
		107B	20			
	2군	119PA	1	1	1	
		119PB	1			
금번(안) [광고일자 : 22.08.11]	1군	107A	59	7	72	※ 분양신고일(2022.08.10, 광고일과 다름) 기준으로 파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함
		107B	20			
	2군	119PA	1	1	1	
		119PB	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변경내용

구분	기존(안) [광고일자 : 22.05.12]	금번(안) [광고일자 : 22.08.11]
공급금액	※ 아래 표 참고	※ 아래 표 참고

납부일정 – 기존(안) [광고일자 : 22.05.12]

계약금(10%)	중도금(5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잔금(40%)
계약시	22.11.15.	23.06.15.	24.01.15.	24.08.16.	25.03.17.	입주지정일

납부일정 – 금번(안) [광고일자 : 22.08.11]

계약금(10%)	중도금(6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잔금(30%)
계약시	22.11.15.	23.05.15.	23.11.15.	24.06.17.	24.11.15.	25.05.15.	입주지정일

□ 금번(안) [광고일자 : 22.08.11]

[단위 : 실 / 원]

군	타입	동/라인	층	공급호실	공급금액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계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60%) 1회(10%) 22.11.15.	2회(10%) 23.05.15.	3회(10%) 23.11.15.	4회(10%) 24.06.17.	5회(10%) 24.11.15.	6회(10%) 25.05.15.	잔금(30%) 입주 지정일
1군	107A	201동 1호	2	1	292,169,920	512,572,800	51,257,280	856,0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256,800,000
			3	1	281,384,208	493,650,720	49,365,072	824,400,000	82,440,000	82,440,000	82,440,000	82,440,000	82,440,000	82,440,000	82,440,000	247,320,000
			4	1	284,797,408	499,638,720	49,963,872	834,400,000	83,440,000	83,440,000	83,440,000	83,440,000	83,440,000	83,440,000	83,440,000	250,320,000
			5	1	287,869,288	505,027,920	50,502,792	843,400,000	84,340,000	84,340,000	84,340,000	84,340,000	84,340,000	84,340,000	84,340,000	253,020,000
			6	1	295,719,648	518,800,320	51,880,032	866,400,000	86,640,000	86,640,000	86,640,000	86,640,000	86,640,000	86,640,000	86,640,000	259,920,000
			7	1	297,426,248	521,794,320	52,179,432	871,400,000	87,140,000	87,140,000	87,140,000	87,140,000	87,140,000	87,140,000	87,140,000	261,420,000
			8	1	299,132,848	524,788,320	52,478,832	876,400,000	87,640,000	87,640,000	87,640,000	87,640,000	87,640,000	87,640,000	87,640,000	262,920,000
			9	1	300,839,448	527,782,320	52,778,232	881,400,000	88,140,000	88,140,000	88,140,000	88,140,000	88,140,000	88,140,000	88,140,000	264,420,000
			10	1	302,546,048	530,776,320	53,077,632	886,400,000	88,640,000	88,640,000	88,640,000	88,640,000	88,640,000	88,640,000	88,640,000	265,920,000
			11	1	302,716,708	531,075,720	53,107,572	886,900,000	88,690,000	88,690,000	88,690,000	88,690,000	88,690,000	88,690,000	88,690,000	266,070,000
			12	1	302,887,368	531,375,120	53,137,512	887,400,000	88,740,000	88,740,000	88,740,000	88,740,000	88,740,000	88,740,000	88,740,000	266,220,000
			13	1	303,058,028	531,674,520	53,167,452	887,900,000	88,790,000	88,790,000	88,790,000	88,790,000	88,790,000	88,790,000	88,790,000	266,370,000
			14	1	303,228,688	531,973,920	53,197,392	888,400,000	88,840,000	88,840,000	88,840,000	88,840,000	88,840,000	88,840,000	88,840,000	266,520,000
			15	1	303,399,348	532,273,320	53,227,332	888,900,000	88,890,000	88,890,000	88,890,000	88,890,000	88,890,000	88,890,000	88,890,000	266,670,000
			16	1	303,740,668	532,872,120	53,287,212	889,900,000	88,990,000	88,990,000	88,990,000	88,990,000	88,990,000	88,990,000	88,990,000	266,970,000
			17	1	304,081,988	533,470,920	53,347,092	890,900,000	89,090,000	89,090,000	89,090,000	89,090,000	89,090,000	89,090,000	89,090,000	267,270,000
			18	1	304,423,308	534,069,720	53,406,972	891,900,000	89,190,000	89,190,000	89,190,000	89,190,000	89,190,000	89,190,000	89,190,000	267,570,000
			19	1	304,764,628	534,668,520	53,466,852	892,900,000	89,290,000	89,290,000	89,290,000	89,290,000	89,290,000	89,290,000	89,290,000	267,870,000
			20	1	305,105,948	535,267,320	53,526,732	893,900,000	89,390,000	89,390,000	89,390,000	89,390,000	89,390,000	89,390,000	89,390,000	268,170,000
			21	1	305,447,268	535,866,120	53,586,612	894,900,000	89,490,000	89,490,000	89,490,000	89,490,000	89,490,000	89,490,000	89,490,000	268,470,000
		201동 3호	2	1	293,842,388	515,506,920	51,550,692	860,900,000	86,090,000	86,090,000	86,090,000	86,090,000	86,090,000	86,090,000	86,090,000	258,270,000
			3	1	287,357,308	504,129,720	50,412,972	841,900,000	84,190,000	84,190,000	84,190,000	84,190,000	84,190,000	84,190,000	84,190,000	252,570,000
			4	1	290,770,508	510,117,720	51,011,772	851,900,000	85,190,000	85,190,000	85,190,000	85,190,000	85,190,000	85,190,000	85,190,000	255,570,000
			5	1	293,842,388	515,506,920	51,550,692	860,900,000	86,090,000	86,090,000	86,090,000	86,090,000	86,090,000	86,090,000	86,090,000	258,270,000
			6	1	296,572,948	520,297,320	52,029,732	868,900,000	86,890,000	86,890,000	86,890,000	86,890,000	86,890,000	86,890,000	86,890,000	260,670,000
			7	1	298,279,548	523,291,320	52,329,132	873,900,000	87,390,000	87,390,000	87,390,000	87,390,000	87,390,000	87,390,000	87,390,000	262,170,000
			8	1	299,986,148	526,285,320	52,628,532	878,900,000	87,890,000	87,890,000	87,890,000	87,890,000	87,890,000	87,890,000	87,890,000	263,670,000
			9	1	301,692,748	529,279,320	52,927,932	883,900,000	88,390,000	88,390,000	88,390,000	88,390,000	88,390,000	88,390,000	88,390,000	265,170,000
			10	1	303,399,348	532,273,320	53,227,332	888,900,000	88,890,000	88,890,000	88,890,000	88,890,000	88,890,000	88,890,000	88,890,000	266,670,000
			11	1	303,570,008	532,572,720	53,257,272	889,400,000	88,940,000	88,940,000	88,940,000	88,940,000	88,940,000	88,940,000	88,940,000	266,820,000
			12	1	303,740,668	532,872,120	53,287,212	889,900,000	88,990,000	88,990,000	88,990,000	88,990,000	88,990,000	88,990,000	88,990,000	266,970,000
			13	1	303,911,328	533,171,520	53,317,152	890,400,000	89,040,000	89,040,000	89,040,000	89,040,000	89,040,000	89,040,000	89,040,000	267,120,000
			14	1	304,081,988	533,470,920	53,347,092	890,900,000	89,090,000	89,090,000	89,090,000	89,090,000	89,090,000	89,090,000	89,090,000	267,270,000
			15	1	304,252,648	533,770,320	53,377,032	891,400,000	89,140,000	89,140,000	89,140,000	89,140,000	89,140,000	89,140,000	89,140,000	267,420,000
			16	1	304,593,968	534,369,120	53,436,912	892,400,000	89,240,000	89,240,000	89,240,000	89,240,000	89,240,000	89,240,000	89,240,000	267,720,000
			17	1	304,935,288	534,967,920	53,496,792	893,400,000	89,340,000	89,340,000	89,340,000	89,340,000	89,340,000	89,340,000	89,340,000	268,020,000
			18	1	305,276,608	535,566,720	53,556,672	894,400,000	89,440,000	89,440,000	89,440,000	89,440,000	89,440,000	89,440,000	89,440,000	268,320,000
			19	1	305,617,928	536,165,520	53,616,552	895,400,000	89,540,000	89,540,000	89,540,000	89,540,000	89,540,000	89,540,000	89,540,000	268,620,000
			20	1	305,959,248	536,764,320	53,676,432	896,400,000	89,640,000	89,640,000	89,640,000	89,640,000	89,640,000	89,640,000	89,640,000	268,920,000
			21	1	306,300,568	537,363,120	53,736,312	897,400,000	89,740,000	89,740,000	89,740,000	89,740,000	89,740,000	89,740,000	89,740,000	269,220,000
			22	1	306,641,888	537,961,920	53,796,192	898,400,000	89,840,000	89,840,000	89,840,000	89,840,000	89,840,000	89,840,000	89,840,000	269,520,000
			23	1	306,983,208	538,560,720	53,856,072	899,400,000	89,940,000	89,940,000	89,940,000	89,940,000	89,940,000	89,940,000	89,940,000	269,820,000
		201동 4호	2	1	294,661,556	516,944,040	51,694,404	863,300,000	86,330,000	86,330,000	86,330,000	86,330,000	86,330,000	86,330,000	86,330,000	258,990,000
			3	1	282,408,168	495,447,120	49,544,712	827,400,000	82,740,000	82,740,000	82,740,000	82,740,000	82,740,000	82,740,000	82,740,000	248,220,000
			4	1	285,821,368	501,435,120	50,143,512	837,400,000	83,740,000	83,740,000	83,740,000	83,740,000	83,740,000	83,740,000	83,740,000	251,220,000
			5	1	288,893,248	506,824,320	50,682,432	846,400,000	84,640,000	84,640,000	84,640,000	84,640,000	84,640,000	84,640,000	84,640,000	253,920,000
			6	1	296,743,608	520,596,720	52,059,672	869,400,000	86,940,000	86,940,000	86,940,000	86,940,000	86,940,000	86,940,000	86,940,000	260,820,000
			7	1	298,450,208	523,590,720	52,359,072	874,400,000	87,440,000	87,440,000	87,440,000	87,440,000	87,440,000	87,440,000	87,440,000	262,320,000
			8	1	300,156,808	526,584,720	52,658,472	879,400,000	87,940,000	87,940,000	87,940,000	87,940,000	87,940,000	87,940,000	87,940,000	263,820,000
			9	1	301,863,408	529,578,720	52,957,872	884,400,000	88,440,000	88,440,000	88,440,000	88,440,000	88,440,000	88,440,000	88,440,000	265,320,000
			10	1	303,570,008	532,572,720	53,257,272	889,400,000	88,940,000	88,940,000	88,940,000	88,940,000	88,940,000	88,940,000	88,940,000	266,820,000
			11	1	303,740,668	532,872,120	53,287,212	889,900,000	88,990,000	88,990,000	88,990,000	88,990,000	88,990,000	88,990,000	88,990,000	266,970,000
			12	1	303,911,328	533,171,520	53,317,152	890,400,000	89,040,000	89,040,000	89,040,000	89,040,000	89,040,000	89,040,000	89,040,000	267,120,000
			13	1	304,081,988	533,470,920	53,347,092	890,900,000	89,090,000	89,090,000	89,090,000	89,090,000	89,090,000	89,090,000	89,090,000	267,270,000
			14	1	304,252,648	533,770,320	53,377,032	891,400,000	89,140,000	89,140,000	89,140,000	89,140,000	89,140,000	89,140,000	89,140,000	267,420,000
			15	1	304,423,308	534,069,720	53,406,972	891,900,000	89,190,000	89,190,000	89,190,000	89,190,000	89,190,000	89,190,000	89,190,000	267,570,000
			16	1	304,764,628	534,668,520	53,466,852	892,900,000	89,290,000	89,290,000	89,290,000	89,290,000	89,290,000	89,290,000	89,290,000	267,870,000
			17	1	305,105,948	535,267,320	53,526,732	893,900,000	89,390,000	89,390,000	89,390,000	89,390,000	89,390,000	89,390,000	89,390,000	268,170,000
			18	1	305,447,268	535,866,120	53,586,612	894,900,000	89,490,000	89,490,000	89,490,000	89,490,000	89,490,000	89,490,000	89,490,000	268,470,000
			19	1	305,788,588	536,464,920	53,646,492	895,900,000	89,590,000	89,590,000	89,590,000	89,590,000	89,590,000	89,590,000	89,590,000	268,770,000
			20	1	306,129,908	537,063,720	53,706,372	896,900,000	89,690,000	89,690,000	89,690,000	89,690,000	89,690,000	89,690,000	89,690,000	269,070,000
			21	1	306,471,228	537,662,520	53,766,252	897,900,000	89,790,000	89,790,000	89,790,000	89,790,000	89,790,000	89,790,000	89,790,000	269,370,000
			22	1	306,812,548	538,261,320	53,826,132	898,900,000	89,890,000	89,890,000	89,890,000	89,890,000	89,890,000	89,890,000	89,890,000	269,670,000
			23	1	307,153,868	538,860,120	53,886,012	899,90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269,970,000
	107B	201동 2호	2	1	288,961,512	506,944,080	50,694,408	846,600,000	84,660,000	84,660,000	84,660,000	84,660,000	84,660,000	84,660,000	84,660,000	253,980,000
			3	1	279,848,268	490,956,120	49,095,612	819,900,000	81,990,000	81,990,000	81,990,000	81,990,000	81,990,000	81,990,000	81,990,000	245,970,000
			4	1	283,261,468	496,944,120	49,694,412	829,900,000	82,990,000	82,990,000	82,990,000	82,990,000	82,990,000	82,990,000	82,990,000	248,970,000
			5	1	286,333,348	502,333,320	50,233,332	838,900,000	83,890,000	83,890,000	83,890,000	83,890,000	83,890,000	83,890,000	83,890,000	251,670,000
			6	1	294,183,708	516,105,720	51,610,572	861,900,000	86,190,000	86,190,000	86,190,000	86,190,000	86,190,000	86,190,000	86,190,000	258,570,000
			7	1	295,890,308	519,099,720	51,909,972	866,900,000	86,690,000	86,690,000	86,690,000	86,690,000	86,690,000	86,690,000	86,690,000	260,070,000
			8	1	297,596,908	522,093,720	52,209,372	871,900,000	87,190,000	87,190,000	87,190,000	87,190,000	87,190,000	87,190,000	87,190,000	261,570,000
			9	1	299,303,508	525,087,720	52,508,772	876,900,000	87,690,000	87,690,000	87,690,000	87,690,000	87,690,000	87,690,000	87,690,000	263,070,000
			10	1	301,010,108	528,081,720	52,808,172	881,900,000	88,190,000	88,190,000	88,190,000	88,190,000	88,190,000	88,190,000	88,190,000	264,570,000
			11	1	301,180,768	528,381,120	52,838,112	882,400,000	88,240,000	88,240,000	88,240,000	88,240,000	88,240,000	88,240,000	88,240,000	264,720,000
			12	1	301,351,428	528,680,520	52,868,052	882,900,000	88,290,000	88,290,000	88,290,000	88,290,000	88,290,000	88,290,000	88,290,000	264,870,000
			13	1	301,522,088	528,979,920	52,897,992	883,400,000	88,340,000	88,340,000	88,340,000	88,340,000	88,340,000	88,340,000	88,340,000	265,020,000
			14	1	301,692,748	529,279,320	52,927,932	883,900,000	88,390,000	88,390,000	88,390,000	88,390,000	88,390,000	88,390,000	88,390,000	265,170,000
			15	1	301,863,408	529,578,720	52,957,872	884,400,000	88,440,000	88,440,000	88,440,000	88,440,000	88,440,000	88,440,000	88,440,000	265,320,000
			16	1	302,204,728	530,177,520	53,017,752	885,400,000	88,540,000	88,540,000	88,540,000	88,540,000	88,540,000	88,540,000	88,540,000	265,620,000
			17	1	302,546,048	530,776,320	53,077,632	886,400,000	88,640,000	88,640,000	88,640,000	88,640,000	88,640,000	88,640,000	88,640,000	265,920,000
			18	1	302,887,368	531,375,120	53,137,512	887,400,000	88,740,000	88,740,000	88,740,000	88,740,000	88,740,000	88,740,000	88,740,000	266,220,000
			19	1	303,228,688	531,973,920	53,197,392	888,400,000	88,840,000	88,840,000	88,840,000	88,840,000	88,840,000	88,840,000	88,840,000	266,520,000
			20	1	303,570,008	532,572,720	53,257,272	889,400,000	88,940,000	88,940,000	88,940,000	88,940,000	88,940,000	88,940,000	88,940,000	266,820,000
			21	1	303,911,328	533,171,520	53,317,152	890,400,000	89,040,000	89,040,000	89,040,000	89,040,000	89,040,000	89,040,000	89,040,000	267,120,000
2군	119 PA	201동 3호	24	1	527,339,400	925,146,000	92,514,600	1,545,000,000	154,500,000	154,500,000	154,500,000	154,500,000	154,500,000	154,500,000	154,500,000	463,500,000
	119 PB	201동 1호	22	1	527,339,400	925,146,000	92,514,600	1,545,000,000	154,500,000	154,500,000	154,500,000	154,500,000	154,500,000	154,500,000	154,500,000	463,500,000

□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변경내용

구분	기존(안) [광고일자 : 22.05.12]	금번(안) [광고일자 : 22.08.11]
청약자격	최초 분양광고일(2022.05.12.)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금번 분양광고일(2022.08.11.)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기존(안) [광고일자 : 22.05.12]	일시	2022.05.17.(화요일)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간까지)	2022.05.20.(금요일) 16:00 이후	2022.05.21.(토요일)~ 05.24.(화요일) (10:00 ~ 18:00 단, 마지막날은 13시까지)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견본주택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501번지)
금번(안) [광고일자 : 22.08.11]	일시	2022.08.16.(화요일)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간까지)	2022.08.19.(금요일) 16:00 이후	2022.08.20.(토요일)~ 08.22.(월요일) 10:00 ~ 18:00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견본주택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501번지)

청약 신청금

구 분	기존(안) 청약신청	금번(안) 청약신청
1군 (107A, 107B)	10,000,000원 (금일천만원)	5,000,000원 (금오백만원)
2군 (119PA, 119PB)	20,000,000원 (금이천만원)	10,000,000원 (금일천만원)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변경내용

구분	기존(안) [광고일자 : 22.05.12]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금번(안) [광고일자 : 22.08.11]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계약기간	2022년 05월 21일(토요일) ~ 2022년 05월 24일(화요일)	10:00 ~ 18:00 (단, 마지막날은 13:00까지)	2022년 08월 20일(토요일) ~ 2022년 08월 22일(월요일)	10:00 ~ 18:00
중도금 대출 범위	본사업은 중도금 대출 이자 무이자 사업이며,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본사업은 중도금 대출 이자 무이자 사업이며,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관련 협조요청'에 근거하여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의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http://운정푸르지오파크라인.com)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은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홈페이지(http://운정푸르지오파크라인.com)를 통해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정하여 견본주택 방문 가능 기간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기간 내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방문기록부 작성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 방문기록부 운영예정)
  - –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을 경우(발열과 기침 및 목 아픔 등 호흡기질환의 증상이 나타나는 유증상자)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 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입장이 불가합니다.
  - ※ 공급계약으로 인한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및 수분양자 본인에 한하여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 가능 기간,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금번 분양광고일(2022.08.11.) 기준입니다.
-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의거 공급하는 호실의 10%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2.08.10,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파주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 ※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 · 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2.08.10, 광고일과 다름) 현재 파주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공개모집하며,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당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경기도 파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거주자 우선공급이 적용됩니다.
-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중복청약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1인당 1개군 1개실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같은 단지에서 2개군 이상에 중복신청 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시	2022년 08월 16일(화요일)	2022년 08월 19일(금요일) 16:00 이후	2022년 08월 20일(토요일)~ 08월 22일(월요일) [10:00~18:00]
방법	인터넷 청약(09:00~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홈 개별 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견본주택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501번지)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 · 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 후 재공급	○	○	X	X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양신고
- 기존 : 파주시 2022–건축과–분양신고–제6호(2022.05.11.)
- 금번 : 파주시 2022–건축과–분양신고–제9호(2022.08.10.)

■ 본 건축물은 파주시 2021–건축과–신축허가–573호(2021.12.23)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98–2번지

■ 용도지역 · 지구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운정지구), 교육환경보호구역(해당없음)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3,998.1000㎡ 중 오피스텔 토지지분 : 3,998.1000㎡
- 건축물 연면적 : 20,158.2165㎡ 중 오피스텔 연면적 : 20,158.2165㎡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 3층 ~ 지하 1층 주차장, 지상 2층 ~ 지상 24층 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 3층 ~ 지상 24층 1개동 오피스텔 총 86실 중 81실
- 주차대수 : 175대

■ 내진설계 등급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0.204g입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 입주예정일 : 2025년 10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시행자 : 주식회사 엠디엠 ■ 분양사업자 : 주식회사 엠디엠 ■ 시공사 : 주식회사 대우건설

■ 신탁사(수탁자) 겸 분양대금 관리자 : 한국자산신탁(주)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군	타 입	공급호실(실)	호실별 계약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1군	107A	59	107.9519	30.6229	17.5044	77.6427	233.7219	46.3702
	107B	20	107.9625	30.5669	17.5062	77.6504	233.6860	46.3748
2군	119PA	1	119.6622	38.2056	19.4067	86.0686	263.3431	51.4021
	119PB	1	119.9112	37.3457	19.4472	86.2477	262.9518	51.5091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파주시)은 「주택법」 제63조2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으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 신청한 자 중 파주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 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 · 초본 등) 검토 후 (2021.08.10, 광고일과 다름) 현재 파주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	타 입	공급호실(실)	신청호실(실) 거주자 우선공급(10%)	일반공급	비고
1군	107A	59	7	72	※ 분양신고일(2022.08.10, 광고일과 다름) 기준으로 파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함
	107B	20			
2군	119PA	1	1	1	
	119PB	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 상기 변경내용 참고
- ※ 상기 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해당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본 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체결시 계약자(수분양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 소인 처리 하여야 합니다.)
- ※ 상기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추후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 최초 계약체결 후, 권리의무승계(전매) 등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포함)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수분양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상기 오피스텔은 86실(4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호실별 공급금액은 면적,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 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공급금액에는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 취등록세), 인지세 등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복도, ELEV홀, 계단실 등)인 공용 면적과 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각 호실별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오피스텔로 계획되어 있는 건축물로 오피스텔 각 호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비율로 분할하였습니다.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며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지적정리, 진입로(가감속차로) 기부채납,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사업자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지정기간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은 시행자 '주식회사 엠디엠'이 알선한 대출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법률의 변경, 금융시장의 변화,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수분양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당사자인 분양사업자 및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 파주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사오니 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전매에 대한 사항은 추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련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전매는 사업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 형사상, 세무상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및 본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도로교통, 지하철 등 철로운송수단 및 기타 건축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일조권 또는 조망권의 침해,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향후 정부의 정책, 파주시청 그리고 해당 사업관계자의 계획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민원 제기 및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는 샘플하우스 면적 및 높이는 실제 시공면적 및 높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II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하여 분양호실 10%를 파주시 거주자에 우선 선정합니다.(파주시 거주자는 청약 신청 시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청약해야 우선분양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 단, 파주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파주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등 · 초본 등) 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도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우선분양 신청결과 경쟁 발생 시 20% 범위 내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우선분양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일반청약에 포함됩니다.
- 금번 분양광고일(2022.08.11.)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당 1개군(1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같은 단지에서 2개군 이상에 중복신청 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동 · 호실은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결정되며,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 · 호수 결정방법
일시	2022년 08월 16일(화요일) 09:00~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간까지)	2022년 08월 19일(금요일) 16:00 이후	2022년 08월 20일(토요일) ~ 08월 22일(월요일) [10:00~18: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유형(군)별 무작위 결정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견본주택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501번지)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에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신한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절차 안내

구 분	구비사항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군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입력 → 청약신청 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 신청금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1군 (107A, 107B)	5,000,000원 (금오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2군 (119PA, 119PB)	10,000,000원 (금일천만원)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신한은행 전 지점)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신한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여권정보증명 포함)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여권정보증명 포함)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신한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정보증명 포함)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창구접수는 대행은행인 신한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만 접수 가능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금번 분양광고일(2022.08.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별 타입 · 동 · 호실을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아래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2년 08월 19일(금요일) 16:00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
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군 내에서 타입 · 호실은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당첨자 계약기간준수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계약기간 내 분양대금납부계좌로 계약금납부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비 후 계약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당첨자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관련법령에 의거 자격제한 없이 임의로 분양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장소 미방문,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부정당첨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함.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III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2년 08월 20일(토요일) ~ 2022년 08월 22일(월요일)	10:00 ~ 18:00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견본주택 (파주시 와동동 1501번지)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일정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오피스텔 계약일정을 홈페이지(http://운정푸르지오파크라인.com)에 게시하여 사전 방문 예약을 받을 예정이오니 예약가능한 시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약하신 시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예약 가능 일정은 당첨자 별도안내 예정]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 계좌 및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신한은행	140–013–804258	한국자산신탁(주)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201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2011001홍길동)

- 예금주 한국자산신탁(주)은 분양관리신탁에 의한 수탁자로서 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공급)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수 및 수분양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위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동 · 층 · 호수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수분양자 인감도장 및 수분양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법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1통) •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신분증 지참
제3자 대리 계약 시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 시 이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수분양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내 비치) – 수분양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인 경우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금번 분양광고일(2022.08.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신청 시와 동일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관계자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수분양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및 주변 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계약 호실에 대해 호수 및 면적, 공급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의 배치 구조 및 동 층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이로 인해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거 수분양자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을 준수합니다. 수분양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신분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사업은 중도금 대출 이자 무이자 사업이며,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납부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하고,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최초 지정한 대출금융기관 이외의 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 알선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관계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수분양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금액 또는 대출조건 등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분양자의 사유로 본 오피스텔의 공급계약을 해약할 경우 중도금대출 무이자 혜택은 소급하여 상실되고, 시행자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해당 시행자에 변제 상환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시행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가능 수분양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수분양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준공 후 담보대출 전환시 DSR 적용에 따라 개인별 대출 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IV 추가선택품목 안내

■ 추가선택품목 안내
- 본 오피스텔의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내역 및 금액, 납부 일정 등은 견본주택에서 상세하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 오피스텔의 공급금액은 하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무상 선택옵션 – 오피스텔

타입	구분	기본형	선택형	비고
107A	침실2,3	분리	통합	–
	다용도실(세탁실) 손세탁볼	설치 (상부장+옷걸이봉+하부장+손세탁볼 및 수전 설치)	미설치 (상부장+옷걸이봉+하부서랍장+엔지니어드스톤 상판 +이동식선반 설치)	
107B	침실3,4	분리	통합	
	다용도실(세탁실) 손세탁볼	설치 (상부장+옷걸이봉+하부장+손세탁볼 및 수전 설치)	미설치 (상부장+옷걸이봉+하부서랍장+엔지니어드스톤 상판 +이동식선반 설치)	
	김치냉장고 공간확보형	병렬형 세탁기, 건조기 공간 (상부장+옷걸이봉+엔지니어드스톤 상판 +세탁기 및 건조기장 설치)	직렬형 세탁기, 건조기 및 김치냉장고 공간 (상부장 설치)	
119PA	다용도실(세탁실) 손세탁볼	설치 (상부장+옷걸이봉+하부장+손세탁볼 및 수전 설치)	미설치 (상부장+옷걸이봉+하부서랍장+엔지니어드스톤 상판 +이동식선반 설치)	
119PB	침실2,3	분리	통합	
	다용도실(세탁실) 손세탁볼	설치 (상부장+옷걸이봉+하부장+엔지니어드스톤 상판 +손세탁볼 및 수전 설치)	미설치 (상부장+옷걸이봉+하부서랍장+엔지니어드스톤 상판 +이동식선반 설치)	
	김치냉장고 공간확보형	키큰장	김치냉장고 공간	

※ 손세탁볼 주변은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으로 마감됩니다.
- 세부사항은 공급안내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손세탁볼 설치 시 하부장에 급,배수를 위한 배관이 설치됩니다.
- 무상선택사항에 따라 가구의 크기 및 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미선택 시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유상 선택옵션 – 오피스텔

1) 가구 유상옵션 – 주방 수납강화형 (107A타입)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107A
금액	3,920,000
비고	미선택 시 : 주방, 침실4 별도구획 / 주방 키큰장 설치 선택 시 : 주방, 침실4 통합 및 펜트리, 시스템가구, 수납 장식장 제공
유의사항	주방 수납강화형 선택 시 FCU 및 점검구 위치, 난방공간 Zoning, 환기구 위치 등이 변경되며, 기본형에서 제공되는 붙박이장(침실4) 및 주방 개수대 옆 키큰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2) 바닥마감재 유상옵션 – 거실, 주방, 복도 타일 (전체 타입)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107A	107B	119PA	119PB
금액	5,900,000	5,440,000	7,910,000	6,900,000
비고	미선택 시 일반 강마루 시공			
유의사항	타일 설치영역은 공급안내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요망			

3) 주방마감재 유상옵션 – 주방 벽, 상판 세라믹타일 (전체 타입)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107A	107B	119PA	119PB
금액	4,010,000	3,790,000	2,700,000	3,890,000
비고	미선택 시 주방벽 : 타일 / 주방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시공			
유의사항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설치영역은 공급안내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요망			

4) 가구 유상옵션 – 드레스룸 벽판넬형 (전체 타입)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107A	107B	119PA	119PB
금액	1,750,000	1,800,000	2,210,000	2,150,000
비고	미선택 시 봉타입 시스템 가구 시공			
유의사항	설치영역은 공급안내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요망			

5) 유상 선택품목 납부계좌

구분	납입금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비고
유상 선택품목 (계약금)	유상 선택품목 합계액의 10%	신한은행	100–035–889118	㈜대우건설 백정완	※ 무통장 입금시 의뢰인란에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의 성명 기재 요망 (예시 : 201동 1001호 홍길동의 경우 → 2011001홍길동)
유상 선택품목 (잔금)	유상 선택품목 합계액의 90%	신한은행	호실별 가상계좌 발급예정	㈜대우건설 백정완	–

-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지정된 호실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오피스텔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옵션 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호실별 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시공사에서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계약 시 현금수취 불가, 신용카드 불가)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유의사항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 · 무상 옵션)의 계약은 오피스텔 공급계약과 별도로 시공사 (주)대우건설이 주관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제품상세내역, 납부금액 및 시기는 추후 별도로 분양계약자에게 공지 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유상옵션 공급금액은 오피스텔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유상옵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입주 시 개별납부) • 유상옵션 비용은 호실 형별로 산출된 가격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잔금은 계약 체결 시 실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201동 1403호 홍길동 : 2011403홍길동 / 201동201호 홍길순 : 2010201홍길순)
- 잔금은 공급계약 체결 시 실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지정된 납부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약금의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실별 추가선택품목의 잔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실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 대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대금 납부계좌 및 실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시공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금 계좌와 오피스텔 분양대금 계좌는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시공 상의 관리문제(발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며, 이는 시공사에 귀속됩니다. (상세내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명기하고 계약 체결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라 인접하는 가구, 마감재, 벽체, 몰딩, 걸레받이, 커텐박스, 등기구,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위치와 형태가 견본주택 및 홍보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의 형태, 사이즈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구성 및 설치위치, 형태 등은 호실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지점에 이르러 생산단종(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개선 등의 사유) 후 신모델 출시 시 동제조사와 동급, 동가로 변경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 시 동급, 동가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추가선택 품목(유상 옵션)의 판매가격은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분에 해당하는 비용과 옵션 품목 설치시 증가비용을 가감 정산하여 반영한 금액으로 호실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대하여는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견본주택에 일부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상세내용 중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 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 진행예정입니다.
- 본 오피스텔 공급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추가선택품목 계약도 함께 해제됩니다.(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 해제 사유에 따라 위약금 및 원상복구 비용 발생함)
- 추가선택품목 설치부위 가구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오피스텔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상품구성 및 디자인, 제품모델,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V 기타 계약자 안내

■ 인지세 안내
- 본 오피스텔 수분양자는 공급금액과 별도로 인지세를 부담하셔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계약시점에 계약자의 책임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전매 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전매계약 시 양수인과 양도인은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
-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을 완납한 후 전매가 가능하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매제한 내용을 확인한 후 법률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권리 · 의무승계를 하여야 하며, 사업관계자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사업관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승계는 무효로서, 사업관계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②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②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승인신청은 사업관계자에 대한 채무(연체 또는 유예된 분양대금의 완납 포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 분양목적물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기관이 발행한 양도인 및 양수인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사업관계자의 대출기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시 "수분양자"는 본 물건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반권리에 대하여 양수인(점유자 포함)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이를 확인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본 계약에 따르는 권리 · 의무가 승계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설령 사업관계자가 권리 · 의무 승계서류를 수령하거나 직인을 날인 하였더라도 이는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한 것이 아니며, 단지 권리 · 의무승계 관련 신청서류를 수령하였음을 의미할 뿐이므로 전매제한과 관련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한(할) 모든 민 · 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 등 모든 책임과 비용은 "수분양자"와 양수인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 · 형사상 소송제기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사업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지정된 일자에 사업관계자가 지정한 장소로 내방하여 기명날인한 후 권리 ·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전매에 관해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전매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관계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물건 취득 인정 시(공급대금의 90% 이상 납부한 경우) 권리양도(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 예정일 : 2025년 09월 예정 • 입주 예정일 : 2025년 10월 예정
-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은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 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금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0의 2호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통지는 SMS로 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계약 관련 사항
※ 본 공급시설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엠디엠, 신탁사(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 시공사 ㈜대우건설 간에 체결한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에 의거 시행 및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1.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대리사무신탁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한국자산신탁(주)은 본 사업의 대리사무신탁사로서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금관리업무만을 수행하며, 분양계약서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분양사업자인 ㈜엠디엠에게 있습니다.
3. 한국자산신탁(주)이 분양계약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분양사업자인 ㈜엠디엠에게 있습니다.
4.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근거하여 대리사무신탁사 한국자산신탁(주)은 분양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분양수입금의 수납 및 사업비 등의 집행 등 자금관리업무만을 담당합니다.
5.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한국자산신탁(주)에서 관리하며, 토지비, 공사비, 사업비, 중도금대출이자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거 분양수입금 총액을 대리사무신탁사 한국자산신탁(주)에게 양도하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7. 한국자산신탁(주)는 분양계약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및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책임이 없습니다.
8. 분양사업자인 ㈜엠디엠이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9. 본 사업 관련 일체의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시행자와 시공사가 부담하며, 대리사무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주)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0. 이 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VI 기타 유의사항(※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일반사항
- 본 분양 목적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당시의 제 법규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타입별, 호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 정리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 면적과 등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호 정산키로 합니다. 단, 관계법령에서 정한 2% 이하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대지지분 변동과 소수점 이하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금액을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계약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계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법 = 형별 면적(㎡) × 0.3025)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차이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호실은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샘플하우스는 수분양자(입주예정자)의 관람용이 아닌 시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1227호, 2021.11.12)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구조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허가도서에 준하며,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허가도서 등을 통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합니다.)
- 본 건물의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사업부지 인접도로의 도로계획,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호 정산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대지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오피스텔 단지 내 입주자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이용 계획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서 임의로 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는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이후 주소 및 계약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변동 사실(주민등록표 등 · 초본 1통, 집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명기)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청약 신청 및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같으며 청약 및 계약의 주소 변경 통지서가 당사로 도달했는지의 입증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분양 대금은 시공사의 공사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로 지출되며, 계약자의 중도 해지에 의한 환불금 반환 의무 및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 의무는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급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시 모형 및 분양 유인물 등에 표현된 오피스텔의 명칭 및 동 · 호수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 신탁사(수탁자) 및 자금관리자, 시공사 날인이 없는 분양 계약은 무효이며, 분양 계약서가 발행되었더라도 계약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본 분양 계약은 무효로 하고, 미리 교부된 분양 계약서는 다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 등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 · 후, 계약자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 내 · 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 · 후 최종 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며, 계약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중도금 납부분부터 위탁사는 계약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단, 계약자는 사업자등록시 위탁사에게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한 미통보 및 통보지연,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 미신고 및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계약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오피스텔은 파주시 시책추진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허가권자에게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공급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 대출이자(연체이자 및 대출관련 수수료 등 제반 비용 포함) 등을 공제합니다.

■ 민원
- 아래 안내사항을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안내사항을 부정하는 행위, 이를 기초로 한 분양(공급)계약 조건의 변경 또는 해제(지)요구, 사업관계자 또는 제3자(행정기관 포함)에 대한 민원신청 등은 할 수 없습니다.
-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사업추진여건 변화, 관계기관 및 승인기관 협의과정,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 시설 및 구조물, 인근 건축 사업계획, 교통여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파주운정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시설(변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오수중계펌프장, 배수펌프장, 유수지, 저류지, 송전탑) 및 구조물(전신주, 가로수, 한전패드, 가스정압기, 지하차도, 보도육교, 생태육교, 공동구환기구, 쓰레기투입구, 변압기, 버스정류장 등)계획 및 현황을 확인 후 분양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소음 및 미관, 악취, 진동, 백연, 인근도로 등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및 계약해지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파주운정지구 및 주변의 도로, 철도 등의 교통계획은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인 · 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 변경,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타 분양 목적물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분양목적물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사양 및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목적물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시설인 소리천 수변공간의 각종 홍보물(CG, 이미지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향후 관련 협의 등에 따라 세부계획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서 등 각종 인쇄물 및 컴퓨터그래픽(CG, 영상물 등), 인테리어, 모형에 표현된 입면디자인, 외벽 색채 및 마감재, 사인,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분양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자재의 품귀, 품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시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착공 후 현장에서의 여건이나 지반현황 등의 상황에 따라 구조, 성능, 상품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배치계획상 주차구획 배분이 다를 수 있으며, 출입동선은 모든 동이 동일하게 계획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출입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색채, 외장재료, 측벽디자인, 창호형태 및 재질 등), 오피스텔 단지명 사인물, 동현관, 지하출입구, 난간의 디테일, DA(Dry Area)등 외부시설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내 · 외부 조경, 경관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단지 내 · 외부 조명 및 공용부 조명,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입주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 입주시, 선행행정행위(건축허가)에 부가해서 이루어지는 후행행정행위(사용승인 등)에 대하여 부당한 방해행위 등으로 지연을 초래할 경우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일반계약자 및 사업주체에 발생된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함을 수인 · 확인하시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사는 시공상의 하자부분에 한하여 보수의 책임을 지며,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여 분양하는 타 상품과의 상품, 외관, 마감사양, 엘리베이터 개소 및 커뮤니티 종류, 면적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집니다.
- 운정1,2지구 내에 위치한 저류시설은 홍수 등 비상 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수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 건립으로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지산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며, 입주시기, 사업추진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호실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정책 추진에 따른 파주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학생배정계획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파주운정지구 내 · 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주변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오피스텔 동별 · 향별 ·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 일조 ·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인접 보행자전용도로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사회재난, 펜데믹 등에 따른 정부의 정책이나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준공 전 · 후 계약자(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부분,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 · 후 최종 건축허가도서 이외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계약자(입주자)가 부담하여 법적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외벽마감, 보행자출입구, 주차장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실제 시공시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 · 배기구, 냉각탑, 주민공동시설(골프연습장 등) 및 실외기실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진동, 백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전기 인입 지상개폐기는 한국전력협의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고 지중 인입선 일부가 단지 내로 경유하도록 설계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석, 인조석, 엔지니어드 스톤, 시트, 타일의 경우 흠집, 결, 무늬, 이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며 사업주체 변경 시 입주자는 이에 대해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후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호실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호실 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 특성상 저층호실 및 차량출입구, 재활용보관소 등과 인접하여 배치된 일부호실은 소음(경보음, 보행자에 의한 소음 포함), 냄새, 미관저하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 수목투사등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천장, 지하주차장 램프, 동출입구, 필로티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시공시 호실 내 우물천정의 깊이 및 폭,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기울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연도(연기배출구), 정화조, DA, 휀룸, 냉각탑 등에 인접한 호실에는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분양목적물의 설계 및 구조에 따라 조성되는 테라스 등 공용부 외부공간에 인접한 호실은 소음 및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에 설치되는 공용파이프 샤프트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옥탑층의 옥외 난간은 건축법 등 높이기준에 따라 투시형 철재 난간 또는 유리난간으로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 광고
- 계약자는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가 공식적으로 제작 및 배포한 광고홍보물(대표홈페이지 내 이미지, 동영상, 리플렛, 공급안내서 등) 이외의 홍보자료와 주변의 구두 과대선전 등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일부 분양상담직원, 부동산중개인(법인), 기타 개인이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작하여 개인 매체(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게시, 배포, 전파한 사항에 대해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식 광고홍보물 여부는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에게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안내 등 인쇄물과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컴퓨터그래픽(조감도, 투시도,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 제시된 컴퓨터그래픽(CG, 영상물 등), 호실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는 107㎡A타입의 샘플하우스가 설치되고, 그 외 미설치된 107㎡B타입, 119㎡PA타입, 119㎡PB타입은 모형 및 분양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건축허가도서 등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견본주택에 설치 된 단지, 주민공동시설, 선큰가든, 단위호실 모형은 대지 주변현황, 각 부위별 치수, 스케일, 마감재, 색상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위호실의 샘플하우스는 필요한 설비 기기, 현관출입문 및 화장실문 등은 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3D 모델링 및 샘플하우스를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 상품이 포함된 영상이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형 및 컴퓨터그래픽(CG) 등에 표현된 외벽 디자인 및 입면의 줄눈형태, 입면 마감재의 입면 돌출, 표현, 재료 색채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 호실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디퓨저, 점검구의 개수 및 위치 등은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고 각 타입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호실,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가구소품,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공급대상이 아니며,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등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으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 제품사양,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계약자 취향 등을 사유로 각 호실별로 위치변경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 외벽 등은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제작된 참고용 제품으로 실제 본 공사시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프레임, 손잡이, 유리 등 구성요소의 형태, 재질, 색채, 사양, 열림(개폐)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시 설계기준,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견본주택 천장, 벽 등에 설치된 DP용 조명은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기, 스위치, 콘센트, 전기분전반, 통신 단자함, 홈네트워크 기기류, 팬코일유니트 등을 포함한 가전제품에 대하여 본 공사시 위치 및 규격, 용량, 제조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자재품 단종,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또는 동 가격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되는 것을 포함)

■ 단지관련
- 당 오피스텔은 하나의 단지명으로 분양 및 홍보하지만 건축법상 1단지(와동동 1500번지 일대)와 2단지(와동동 1498–2번지)로 분리된 개별 오피스텔 단지이므로 각 단지별 시설, 면적 등의 차이가 있으며, 관리규약 및 관리단(입주자대표회) 등이 각각 구성됨을 수인 · 동의합니다.
- 1단지(와동동 1500번지 일대), 2단지(와동동 1498–2번지)는 개별 건축허가를 득한 개별단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2. 5.]에 따라 입주 후 2개단지 관리단 집회의 집회결의(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1,2단지를 공동관리 할 수 있으나, 이는 주민공동시설의 공동사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관리 외에 시설의 공동 사용은 2개단지 각 관리단 집회 상호간 협의해야 할 별도 사항입니다.
- 본 오피스텔은 1개동으로 구성되며 단지레벨,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1층에는 비상차량 동선, 이삿짐차량 동선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차량의 소음 및 진동, 야간의 차량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지 동측 25m(가람로150번길), 남측 8m(보행자전용도로) 도로가 조성되어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바람세기가 다를 수 있으며, 연돌효과로 인해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 닫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착공 후 현장여건이나 지반현황 등의 상황에 따라 구조, 성능, 상품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 · 허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동측에 운정스포츠센터 및 운정환경관리센터(폐기물처리시설)(파주시 와동동 1503번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악취, 백연 및 시설물(굴뚝 등)로 인한 미관저하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북동측에 운정(맑은물)체육공원 및 운정 공공하수 처리시설(파주시 와동동 1516번지)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악취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북동측에 변전소(파주시 와동동 1512번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동측으로 송전탑이 배치되어 미관저하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남측으로 물순환 취수펌프장(파주시 와동동 1485번지) 및 배수펌프장(파주시 와동동 1478번지)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남측으로 경의중앙선(금릉역 – 운정역 간 해당)이 위치하여 열차 운행간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서측 부지(파주시 와동동 1498–3번지) 및 북측 부지(1498–1번지)에 추후 건축계획에 따라 일부호실에 조망, 일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용도 부지(파주시 와동동 1506번지)에 추후 건축물 계획에 따라 미관저하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전기시설물(한전패드 등),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등의 위치를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주운정1,2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비(옥외)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및 재활용 분리수거장은 201동 4호라인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직간접적인 소음, 냄새, 진동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설치위치 및 개소는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 · 동의하며, 이에 대해 지자체 및 사업주체,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외부휴게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호실은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옆, 상부층 호실은 필로티에 설치된 놀이/휴게/운동시설물 등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인공지반 녹지 하부에는 우수침투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와 수목의 뿌리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근기능으로 자갈 배수층으로 시공할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배수/방근 시스템 등에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파주운정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보행자전용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각종 인입(상수, 하수, 오수, 전기 등)계획은 인 · 허가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동 계단실에는 매층마다 공용부 창호가 설치 되며, 각 층의 복도에는 자동개폐창호가 설치되며, 각각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동 공용부 복도에는 피난을 위한 노대, 배연창 등이 설치되며, 크기 및 형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호실이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라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문주, 차량출입구 및 동 출입구,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은 특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계약체결 후 허가 도면상 토지의 지형지물 및 대지의 경계지반의 높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내외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내 · 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 개수 및 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크기, 개폐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시 호실 마감자재(수전이나 액세서리류 포함)의 설치 위치 및 전열교환기, 팬코일유니트 실내기 및 점검구, 천정 카세트형 환기장치, 환기구, 욕실팬, 온수분배기, 자동식소화기, 각종 배수구의 위치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 및 크기 등이 상이하게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하주차장 층고, 일부 지하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출입구, 창틀분할,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단지의 명칭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 주출입구 인접호실 및 상층호실은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로비, 엘리베이터홀, 복도,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공간은 관계법령에 따라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 공사의 특성상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주요 구조부 및 각 호실 내에 자재 반입 등을 위한 임시 개구부를 공사 기간 중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에 설치된 엘레베이터는 모두 장애인용으로 적용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의거해 장애인용 엘레베이터의 바닥면적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본 분양목적물은 복합용도로서 단지 내 상호 시설간의 소음, 민원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각 용도별 입주자(입점자)의 일방적 제한조치가 불가하며 상호간 협의 ·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로 진입하는 보행자 동선은 북동측(가람로150번길)에 1개소, 남동측(가람로116번길)에 1개소(자전거 이용자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단차극복을 위한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외관에 건물명칭 및 간판, 조명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최하 2개층 및 최상층 모든 호실에는 방범을 위하여 창호마다 내부에 동체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 외부시설물, 도로 및 보행로의 선형과 바닥 패턴, 포장재, 디자인, 위치 등은 인허가 협의 및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남측 (보행자전용도로, 8m)에 계획된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입주자가 임의로 전용화하거나 휀스 등의 시설물 설치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내 조경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입점자) 공동 부담입니다.
- 단지 주변의 도로공사 또는 행정적 원인으로 인하여 공개공지, 도로의 경사도, 대지의 레벨, 조경, 옹벽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선형 및 조경선형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에 지하층 환기를 위한 DA(dry area) 그릴창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 냄새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역 열원을 이용한 냉방운전에 필요한 냉각탑은 201동 북측 지상1층에 배치되어 있어, 백연(수증기)이 D.A를 통해 배출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동은 2개의 코어로 구성되어 각 호실들을 연결하며, 일부호실의 출입구는 다른 호실에 비해 다소 거리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층의 일부호실 및 지상2층 일부호실에 위치한 옥외공간은 공용공간이므로 전용화할 수 없으며 안전관리, 생활침해, 보안상 이유로 콘크리트 벽, 트렐리스, 난간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본 건축물의 구조(구조시스템 및 기초형식 등) 및 흙막이공법은 도로점용 가능여부, 시공여건 또는 굴착 후 지반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에는 자전거보관대 및 모빌리티보관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위치와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비상차량동선 및 접근로 확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 경고등이 설치되어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발생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방송 시설물로 인해 일부 실의 경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해야하는 사항으로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고, 미술장식품 설치 없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북동측에 한전패드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는 한전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사항으로 위치이동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일 이후 분양계약자의 50% 이상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주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사업주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 건축물을 관리할 목적으로 사업주체는 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관련 용역계약에 의거 부과되는 관리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오피스텔 주차는 전체 지하 자주식 주차장으로 175대로 계획하였고 지하1층~3층은 오피스텔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며,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배치계획 상 동별 주차구획 배분이 다를 수 있으며 동별 출입동선은 모든 동이 동일하게 계획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출입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삿짐은 당 건물의 특성상 지상1층 동 코어 내 승강기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하 3층 오피스텔 주차 차량 높이제한은 2.7m로 대형 이삿짐 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함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유효 높이	2.7m	2.3m	2.3m
사용자	오피스텔		

※ 유효높이는 차량 통로의 높이 기준이며 주차 구간의 일부는 설비 및 구조를 위해 유효높이 2.1m 이상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동측에 차량진출입, 차량 정차공간이 위치해 있어 혼잡, 통행불편, 사생활권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위치한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사로에 인접 호실은 차량 출입으로 인해 소음, 야간 불빛 등의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되는 도로는 도로점용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오피스텔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주변의 교통계획은 파주시의 교통개선대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진출입구에 인접한 호실의 경우 진출입하는 차량의 헤드라이트로 인한 눈부심, 현휘와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마감재는 페인트, 석재 등이고, 고층부 마감재는 페인트, 금속재 등으로 되어 있어 위치 및 층수에 따라 마감재가 다름으로 인해 외관 및 빛 반사, 현휘 등의 간섭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층 단차, 건물 구조 등으로 인해 조성되는 외부공간(테라스 등)에서 입주민으로 인한 소음 및 각종 문제에 대해서 사업주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 옥외공간은 건축법상 공용공간입니다.
- 일부 지붕(테라스) 및 외부공간은 호실 전용으로 사용 불가하며, 입주자 전용으로 테라스 사용 시 입주자의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에서 접근이 곤란한 지붕(테라스) 및 외부공간 등은 진입이 가능한 호실에서 유지, 관리해야 하며, 공간의 점검 필요 시 해당 입주자의 전용공간을 통해서 유지 보수를 해야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오피스텔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 인입장비 및 한전패드, 통신 인입맨홀, 통신주 등이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호실, 단지 내 보행로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휀스는 공개공지구간에는 설치되지 않으며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승하차 대기공간 등의 실외기 설치로 인해 인근 호실은 소음 진동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인근호실은 이를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연자재(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단지 내 외부공간은 오피스텔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모빌리티 보관대는 동 하부에 모빌리티의 주차구획으로 설치되며, 입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타 전기, 기계관련 추가시설 설치 및 관리는 입주자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 · 허가조건 변경, 각종 인증을 위한 변경사항 등에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단위호실〉
- 본 건축물은 건축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호실은 외부 입면 특화계획에 따른 구조물 및 경관조명으로 인해 시야간섭, 눈부심, 현휘, 채광 및 일조권 불리 등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면디자인상 외부의 곡선 돌출장식물은 호실마다 곡선의 형태, 돌출길이, 두께, 위치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음영이 생기거나 시야, 조망, 채광, 일조 등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지자체, 사업주체,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최상층 호실에는 지붕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조망, 일조 등이 간섭될 수 있으며, 지붕구조물의 구조기둥, 통기관의 입상 등이 테라스에 설치됩니다.
- 오피스텔 최상층 호실에는 지붕구조물로 인한 구조안정성을 위해 구조물의 위치, 갯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최상층 하부호실 천장으로 통기관이 형성될 수 있으니 계약 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최상층의 옥탑구조물에는 경관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빛공해, 시야, 조망, 음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 지하1층에는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단지 내 공동시설로서 인근 단위호실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상 선택, 유상 선택 옵션 사항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및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상판 및 현관디딤판 등은 유무상 선택 옵션에 따라 엔지니어드 스톤 또는 세라믹타일 등을 사용하며,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보일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는 타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일 및 석재, 마루 등은 바닥재는 자재의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 실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타입 유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호실 내 가전제품(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인덕션, 전기오븐, 식기세척기)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제품은 현장 공정에 맞추어 납품되며, 해당 모델이 제품설치를 하는 시점에 단종, 자재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판넬 색상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 호실내 설치되는 중문은 제품 특성상 중문 문짝과 벽체 사이의 틈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방음, 기밀성능이 없는 제품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의류 스타일러 등), 가구 등이 너비, 깊이, 높이 등의 차이로 설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되어 있고 각 호실 간 골조(경계벽 및 바닥구조, 기둥, 보)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층간 또는 호실 간 벽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옥탑층의 관리 및 각종 설비 장비의 운영으로 인해 인접한 호실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단위호실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난방은 온수 바닥 난방이고 냉방은 천장형 팬코일유니트(무상제공)이며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팬코일유니트와는 모양과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난방 및 급탕은 지하1개실에 지역난방 열교환기를 통한 중앙방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 단위호실 욕실 바닥부위는 물넘김 방지를 위해 단차가 있으며 단차의 높이는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도어 후면 벽체 부분이나 침실 내부벽체 등에 설치되고 실제 시공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타입 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단위호실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각 실의 환경 조건 및 사용자의 이용 방식에 따라 일부 호실에서 창호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내측에 설치된 세탁실 등에는 내부 온 ·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이 설치되는 가구의 비 노출면(후면, 측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도장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107㎡의 천장고는 2.45m, 119㎡의 천장고는 2.60m로 시공될 예정이며 향후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타입별로 천장에 설치되는 천장의 구조(우물천장 커튼박스의 크기 및 높이 등)가 다르며 본 공사시 시공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구조, 크기 등이 변경(축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구조상 동일한 타입이더라도 호실별 위치에 따라 조망 및 방향, 일조량, 사생활 간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외부조망사진은 연출용으로 실제의 조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각 호실 내 외부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난간, 방충망 및 방진망의 제조사, 크기, 형태, 재질, 사양, 접합방식, 디자인, 색상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부 벽체 중 일부는 경량벽체로 시공되며,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단위호실의 미서기창에는 일체형 유리난간이 설치되어 환기량이 일반적인 철제 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방창호 제외)
- 단위호실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오피스텔 201동 3호라인의 107㎡A타입은 구조 상 침실1(안방)의 측면에 높은 창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107㎡타입과 119㎡타입의 상이한 평면구조로 인해 119㎡타입은 주방 및 화장실, 다용도실(세탁공간) 등의 설비배관은 층상배관으로 시공되며, 하자 발생 시 해당 호실의 바닥 철거가 필요할 수 있음을 수인 · 동의합니다.
- 최상층 호실 상부는 외부공간으로써 단열재의 두께 및 위치가 기준층 호실과 다르게 시공되며, 이에 따라 내 · 외부 마감재 및 냉 · 난방 부하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1동 2층 호실은 하부 지상 1층이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어 기준층 호실과 난방효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호실 상부는 외부공간으로써 단열재의 두께 및 위치가 기준층 호실과 다르게 시공되며, 이에 따라 내,외부 마감재 및 냉,난방 부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최상층 하부 호실의 층고는 설비공간 및 단열재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기준층의 층고보다 400mm가 높지만, 천장고는 기준층과 동일합니다.
- 각 호실 천장내부에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단위호실 천장 내부에 카세트형환기 장치 및 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은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용부의 평면 및 각종 시설물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내 외부 창호사양(프레임 사이즈 및 색상, 유리사양 및 색상, 하드웨어, 방충망 등)은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내풍압을 고려하여 실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입면부 및 옥탑부에 설치되는 조명으로 인해 인접호실에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장비(실외기, 탈취기, 제연팬)에는 방음, 방진패드를 설치하여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 하였으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층의 오피스텔 출입문은 스틸도어가 설치될 예정이며 관련법령에 의해 방화구획이 아니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에 보행자 통로, 자전거보관소 등이 형성되어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부호실 및 인근호실에 생활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되어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옥상의 구조물은 실시공 시 구조물 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로 시공될 수 있으며, 구조물 상부 및 내부면에는 도장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명 및 B.I는 실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호실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필로티 천정과 출입구 주변의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각 라인의 평면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라인의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외부 테라스가 설치되는 부분은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진입 되는 구간(호실 내 거실 침실 등)에 난간 또는 난간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호실에 설치되는 옥외 테라스의 바닥 마감은 CG 및 모형에는 목재데크 또는 조경마감(119㎡PB 현관 전면테라스)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지관리 및 하자방지를 위해 본 시공 시 타일로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공 시 일부 호실에 설치되는 옥외 테라스의 우수 처리를 위해 상부 호실의 우수관이 해당 호실의 옥외 벽면을 지나갈 수 있음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실을 하지 아니하여 계약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 등)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시설(정압시설, 지상개폐기, 상하수도시설 등) 설치를 위해 대지일부가 무상으로 공급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야 간섭, 조망권, 소음, 진동,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기반시설 공급자와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2 제4항에 의거 201동 옥상층과 지하1층, 지상10층 EPS/TPS실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옥외안테나 및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시공과정에서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창(또는 녹지구간)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탑 및 옥상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피뢰침(측벽포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 장비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 호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옥탑층과 건축물 입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고, 옥탑에는 피뢰침, 위성안테나, 경관조명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침해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천장내부에 상부 호실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이 발생하거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호실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고, 실내 벽체 및 천장에 설치되는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량,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배관의 파손 및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등), 온도조절기 등의 설비는 노출될 수 있고, 본 공사시 위치 및 규격, 제조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의 맨홀,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의 인입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일부호실 천장내부는 기계 및 전기설비 배관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수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인근호실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코어와 인접한 호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 설비, 상하수도, 중수, 경관조명, 가로등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추후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설비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개소 및 위치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위치와 충전기 수는 변경될 수 있고,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공용복도 또는 공용복도의 노대에 소방 관련법규에 따라 배연창(지상2층~최상층) 및 완강기(지상3층~지상10층), 소방관 진입창(지상2층~지상11층)이 설치되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 단지는 가스가 설치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추후 별도로 가스설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별 현관 상부벽체에는 피난유도표지판(탈부착식)이 관련 소방법에 의해 설치됩니다.
- 구내통신실(TPS, 층통신실)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이는 법적시설로서 그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호실 천장내부에 상부호실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 단지는 실외기실 및 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입주자가 개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으며 실내 천정 카셋트형 팬코일유니트 등과 호환되지 않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냉, 난방 공급설비의 용량 제한으로 실내 냉방기기의 용량 증대 및 증가가 불가합니다.
- 욕실배관에 대한 상세설계는 현장여건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설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 주방, 욕실의 환기설비는 직배기 방식으로 직 · 간접적인 소음, 냄새 등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외벽에 배기구가 설치되어 입면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며, 영구배수 설비운영에 따른 유지 관리비용은 입주자(입점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각종 기계설비 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은 주차장 상부 공간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시설별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용함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난방은 지역난방열교환기를 이용한 온수바닥난방 방식입니다.
- 본 오피스텔 단지는 실외기실 및 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입주자가 개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으며 실내 천정 팬코일유니트와 호환되지 않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팬코일유니트의 냉방 열교환기 공급설비가 중앙제어로 작동됨에 따라 장비운전을 중단할 시 실내 냉방기가 작동되지 않으며 이는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 오피스텔 냉방은 지역냉방방식으로 호실별 천장형 팬코일유니트가 설치되고 설치위치, 수량 등은 타입, 호실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팬코일유니트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천장형 팬코일유니트는 무선리모콘 작동 방식으로 별도의 벽부형 스위치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가 임의로 냉 · 난방 공급설비의 용량 증설이 불가합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실내천장 내에 기계식 환기 장치가 노출형으로 설치되며, 이를 위한 천장 점검구 및 환기구가 설치되고 기계식 환기 장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정 카세트형 환기장치는 무선리모콘 작동 방식으로 별도의 벽부형 스위치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홀 및 방화구획경계(복도)에는 상시개방형 갑종방화문(자동폐쇄장치설치)이 설치되고, 이는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시설로, 이에 대해 위치이동,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위호실의 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는 호실 내 씽크장 하부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세탁실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주민공동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용 중계기 및 안테나, 피뢰침,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을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스마트홈(홈IoT)과 빌트인 음성 스피커 기능은 사업주체와 스마트홈 사업자(코맥스 예정)와의 협약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상세한 서비스 기능 및 사용요금은 스마트홈사업자(코맥스 예정)측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홈(홈IoT)과 빌트인 음성 스피커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일부 서비스 항목이 추가,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기본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거실조명, 냉방, 난방, 환기 등)에 대한 제어기능 외 스마트홈(홈IoT)과 연동되는 가전제품(공기청정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소비자가 별도 구매하여야 합니다. • 기기 제어는 호실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가능하며(호실 내 무선 AP가 설치되지 않음), 통신 및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스마트홈사업자(코맥스 예정)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 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폰전용 어플 및 호실 인증 필요, 휴대폰 제어시에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 주민공동시설
- 주요 주민공동시설은 입주 후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전까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가 제공한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되오니, 계약 전 운영방식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주민공동시설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이 결정하도록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프라이빗 시어터 등)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시공시 현장여건 및 행정상 등의 이유로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형태, 내부구조, 면적, 건축계획과 마감재 등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 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과 주민공동시설의 출입구 및 동선은 중복되어 같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편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주민공동시설은 공간만 제공하고 내부 집기, 비품 및 운영은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자체적인 비용으로 유지,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운영방식 및 관리비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화 프로그램 이용 시 개별비용 발생 및 개별호실에 관리비로 부과되며, 전문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될 경우 서비스 운영 종료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공된 공사부위, 추가 설치된 전자제품 및 집기/비품 등은 주민공동시설 내에서 철거 및 반납되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 등의 사양은 각 시설의 기능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들은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의 사양 등에 대한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편의를 위한 주민공동시설은 원칙적으로 오피스텔 입주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사용승인 후 관리비 절감 및 건물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이 결정하여 입주자 외에 외부인원에 대하여 유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지하1층에 위치한 주민공동시설은 호실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주민공동시설 규모와 용도는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다른 단지와 비교 등을 이유로 추가설치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일부 시설 및 공간은 준공 후 현장AS 및 유지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 구성 후 공문 요청 시까지 현장사무실 및 입주지원센터, AS센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1단지, 2단지 주민공동시설은 별개의 시설로 개별 단지 입주민에 의해 운영 · 관리되며, 타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이용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기타유의사항
- 오피스텔의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계약자의 판단하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추후 입주 시 임대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 등으로 전환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 후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며, 계약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중도금 납부분부터 위탁사는 계약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단, 계약자는 사업자 등록 시 위탁사에게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한 미통보 및 통보지연,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 미신고 및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의 책임이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의 보존 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 · 입점 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이 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승인(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입주자(오피스텔) 사전방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0의2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회사명	감리금액(단위 : 원, VAT별도)	사업자 번호
건축	(주)씨엠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480,000,000원	201–81–59888
토목			
기계			
소방	(주)씨엠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330,000,000원	201–81–59888
전기			
통신			

■ 사업관계자

구 분	회사명	주소	법인번호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엠디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 20층)	110111–1537385
시공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110111–2137895
신탁사(수탁자) 겸 자금관리	한국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	110111–2196304
분양사	주식회사 엠디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 20층)	110111–1537385

※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관계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등록사업자 : 주식회사 엠디엠
- 부동산개발등록번호 : 서울130029 (등록일자 2008년 03월 28일)
- 사업방식 :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
- 소유권에 관한사항 : 대지소유권 100%확보
- 소유권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등기

■ 견본주택, 사이버 분양홍보관(홈페이지) 위치 및 분양안내
- 견본주택 위치 : 파주시 와동동 1501번지
- 연락처 : 1588–7734
- 홈페이지 : http://운정푸르지오파크라인.com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를 우선합니다.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1588-7734

지하 3층~지상 24층 107 (84실) / 119P (2실)

신탁사 KAIT 한국자산신탁 시공사 대우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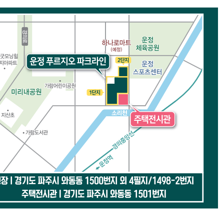

현장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500번지 외 4필지/1498-2번지
주택전시관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501번지